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審 査 報 告 書

2007. 3. 28.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15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3.26.)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상필)

가. 제안이유

-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인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안 제4조)
- 행정국의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안 제5조)
-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부서명 변경(안 제9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김완섭)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 하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 전략사업인 창의실현을 현재 “혁신기획단”의 행정혁신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 2007년 2월 26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한 연장, 200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혁신전담기구의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 연장 협조요청이 있어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연장하는 것이며,
- “행정국”의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업무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4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인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안 제4조)
- 행정국의 “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 (안 제5조)
-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부서명 변경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법적근거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10(2007.2.26)
서울시 조직담당관-2233(2007.3.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07. 3. 12. ~ 3. 19.
-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중 “혁신기획단(한시기구)”를 “창의혁신단(한시기구)”로 한다.

제5조제2항제22호를 삭제 한다.

제9조제1항중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6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 부칙 제2조(혁신기획단 존속시한)의 제목 및 본문 중 “혁신기획단”을 각각 “창의 혁신단”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존속시한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중 “혁신기획단”을 “창의혁신단”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u>혁신기획단(한시기구)</u>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p> <p>제5조(행정국) ① (생략) ② (생략) 1. ~ 21. (생략) 22. <u>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u> 23. ~ 26. (생략)</p> <p>제9조(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u>치수과</u>,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생략) 1. ~ 20.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조례 제612호)</p> <p>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u>혁신기획단</u> 존속시한) <u>혁신기획단</u> 존속시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 <u>창의혁신단(한시기구)</u>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조례 제612호)</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u>창의혁신단</u> 존속시한) <u>창의혁신단</u> -----.</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 <u>창의혁신단(한시기구)</u>-----.</p> <p>제5조(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22. <삭제> 23. ~ 26. (현행과 같음)</p> <p>제9조(건설교통국) ①----- ----- <u>치수방재과</u> ----- -----.</p> <p>② (현행과 같음) 1. ~ 20. (현행과 같음) 21. <u>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조례 제612호)</p> <p>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u>창의혁신단</u> 존속시한) <u>창의혁신단</u> ----- 2008년 6월 30일 -----.</p>